

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25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5)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2)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7)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8)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3)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6)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1)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3)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3)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2)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5)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1)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5) 2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2) 2

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0)	2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3)	2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4)	3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7)	3
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8)	3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3)	3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6)	3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1)	3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5)	3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4)	3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3)	3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4)	3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3)	3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2)	3
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5)	3
2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1)	3
2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22.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23.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7
24. 2024년도 국정감사 중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9
o 현안질의	11

(15시41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한 후 국정감사에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당초 예정된 국회 일정이 있어서 잠시 이석을 허용하였습니다. 장관 참석 시까지는 장관석에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회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결이 필요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5)
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2)
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0)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3)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4)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7)
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8)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3)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6)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1)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5)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4)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3)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4)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3)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2)
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5)
2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1)
2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2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은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조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경종 의원, 이만희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동수 의원, 민형배 의원, 정을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사태 중 통합방위사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형배 의원, 신영대 의원, 이해식 의원, 박성훈 의원, 서영교 의원, 이종배 의원, 김승수 의원, 곽규택 의원, 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른바 ‘슬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 등이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며 필요적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 이상식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아환자가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구급활동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 등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님을 비롯한 소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모두 법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토론을 해야지요.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3분 내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서요. 지금 제출되어진 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어떻든 간에 음주운전과 관련되어진, 별칙과 관련되어진 사항들인데요.

13·14·15페이지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특정하고 측정할지에 대한, 그래서 이게…… 물론 지난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상당한 이유를 누가 판단하고 어떤 것을 판단할 것인가? 얼굴이 빨갛다면 얼굴 혈색이 원래 빨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흥분해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판단한다, 이게 법률이 너무 과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충분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일단은 측정을 하기 전에 음주감지기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통상 음주단속 현장에서 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가 되면 측정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감지가 되면 음주를 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이고요. 감지조차도 불응하는 경우에 현장에서 외표검사를 하게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육안으로 혈색 그리고 냄새 그리고 걸음걸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음주 여부를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법률안이 통과되었을 때 경찰의 자의적 결정이 아주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번 그 사건인 경우는 음주자로 예견된 사람이 차량을 버리고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실제 측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주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추후에 확인될 수도 있는데 수사를 통해서, 지난번의 경우에도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음주를 했고 음주한 시간과 그리고 운전한 시간의 어떤 그런 접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이 법률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자의성을 모두 다 이 '상당한 이유'로 포괄적으로 열어 두게 되어지면 실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경찰의 판단이 종국적인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의 판단을 통해서,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은 충분히 납득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개별 법률안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7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1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을 대신해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과 법안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석곤 소방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소방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22.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시57분)

○위원장 신정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2024년 10월 7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로 하고 행정안전부 등 22개 위원회 선정 기관과 서울경찰청 등 13개 본회의 승인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해당 시도 경찰청에 대해서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중앙감사반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경찰청에 대해서는 지방감사 1반과 제2반으로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짧은 감사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통합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25일에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국정감사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른 세부 일정 조정과 지방감사반의 구성 변경 등 국정감사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간사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5시58분)

○위원장 신정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할 것과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서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위원님들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을 요구하고 의결 이후에 접수되는 서류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각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받고자 합니다.

다만 서류 또는 자료제출 요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에 따라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므로 적법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정해진 기한을 고려해서 요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서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각 부처 기관장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재차 재삼 강조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제처 역시 국회가 각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실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위원장은 국정감사와 더불어서 청문회 개최를 포함한 국회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방법을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의미를 보다 무겁게 여기셔서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국정감사 중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채현일 위원** 위원장님, 자료 관련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채현일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예,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국정감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관들이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 같은 경우는 출장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연락도 없고 지금까지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장관님께서 좀 잘 챙겨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채현일 위원** 그리고 소방청 같은 경우도 구급대 이송과 관련한 자료제출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의료대란 문제가 있어서 부담스러운 것도 이해가 되지만 국감을 앞두고 객관적 데이터를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인재개발원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외부강사 명단을 요청했더니 이름을 모두 가리고 제출했습니다. 또 그 사유를 봤더니 이름이 공개되면 외부강사 섭외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강사 선발 기준에 부합하는지 또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게 국회의 책무인데 그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기피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린 대로 국회는 국가기관 어느 기관보다도 더 높은 권위로 또 법률상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각 기관들은 거기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경찰청이나 감사원이나 권익위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로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은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본 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라도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제출을 해태하거나 또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이를 참고해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4.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6시04분)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증인 채택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여당 조은희 간사님의, 그리고 양당 간사님의 협의가 있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부처의 기관장과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그리고 소속 기관장을 중심으로 과거 상임위 관례를 존중하여 증인 명단을 작성하였습니다.

일반증인의 경우, 각 시도 경찰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소속된 합의체 행정기관이나 업무에 있어서 시도 경찰청과 연관성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경찰청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영섭 KT 대표 이사 등 총 62명의 증인과 허경옥 진도유족회 회원, 한종희 삼성전자 사장,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등 5명의 참고인을 채택코자 합니다.

향후 추가적인 일반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모든 안건을 마쳤습니다만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여야 위원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정부를 대상으로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한 후에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예, 조윤희 간사님.

○**조은희 위원** 조은희입니다, 윤희가 아니고.

○**위원장 신정훈** 예, 조은희 간사님.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증인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떤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신정훈 위원장과 또 윤건영 간사님께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협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아쉬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증인 협의는 내실 있는 감사 수행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충분한 협의 시간이 제대로 확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는 증인 협상을 위해 어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통화만 잠깐 하고 또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했습니다.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다 증인 채택 시간이 임박해서 만나서 밀려서 결정하는 그런 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소수 여당인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절대다수인 민주당이 일방통행으로 강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민주당의 선심을 기대하는, 기다려야만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명단, 원하는 시기에 일방 강행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과정으로 소수 여당의 목소리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로지 정치적 공세를 위한 일방적인 무더기 증인 채택 요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8월 청문회 때도 민주당은 증인 명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국민이 아닌 정치적 공세를 위한 증인 채택이 반복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번에도 초반에 보내온 증인 명단을 보면 행안위에서 계엄 의혹을 검증하겠다면서 육군 수방사 사령관·특수전사령관·방첩사령관을 모조리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풍문과 낭설에 불과한 계엄 가짜뉴스를 가지고 협역 사령관들을 소집시켜 도대체 어떠한 검증을 하고 싶다는 건지 의문이고 정쟁이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에 누가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정감사 때가 되면 무더기로 증인을 채택하는 건 고쳐지지 않는 국회의 오랜 관행이다. 하지만 이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과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영표 전 의원이 언급한 말입니다. 홍영표 전 의원은 증인을 부르지 않고도 송곳 질의로 유명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행안위에서 이러한 일방적인 협의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을 위한 일방적인 회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중립을 지켜 주시길 바라며 이러한 어려움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히 조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중인 협의가 이루어져 앞으로의 국정감사가 정치적 공세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사석에 앉았으면 대꾸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관계로 특별하게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요.

○ 현안질의

(16시28분)

○ 위원장대리 윤건영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여야 위원님들 신청을 받아서 정부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몇 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주당에서 박정현 위원님, 양부남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안 계신가요?

○ 김종양 위원 저요.

○ 위원장대리 윤건영 김종양 위원님.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양부남 위원님, 김종양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해식 위원님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여야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각 위원님별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박정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님.

○ 경찰청장 조지호 예.

○ 박정현 위원 지난 9월 11일 날 금융노조 집회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 때문에 박홍배 의원과 보좌진이 다친 사실 아시지요?

○ 경찰청장 조지호 예.

○ 박정현 위원 박홍배 의원은 방패에 찍혀서 전치 2주의 발목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경찰의 과잉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일 날 해당 장소에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다수가 있었고 보좌진들이 정보관에게 국회 의원이 참여한다는 사실도 알렸고요. 특히 당시 박홍배 의원과 김주영 의원은 집회가 곧 해산될 시간이 됐으니까 진입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경찰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진입을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의 과잉대응 아닙니까,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집회에서 조차 이렇게 하면 일반 시민들이 그냥 참여하는 집회에서는 경찰들이 얼마나 더 과잉대응을 할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께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채증 영상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패에 찍혀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채증 영상은 경찰에서 제공한 영상이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러니까 그……

○박정현 위원 모든 영상을……

○경찰청장 조지호 그 영상을……

○박정현 위원 아니, 청장께서는 영상을 봤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영상을 다 보지도 않았고 저희 의원실에 관련 경찰관이 영상을 가져왔지만 본인들이 보여 주고 싶은 영상만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찍은 영상 중에는 비슷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그 영상을 보여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무리한 진압인지 여부를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영상에…… 어쨌든 박홍배 의원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건 사실 아닙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런데 그것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 또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박정현 위원 무리한 진압 때문에 그렇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방패에 찍혀서하고 그게 인과관계가……

○박정현 위원 의원이 거기 무시로 가서 그냥 폭행을 당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방패에 찍히거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에서……

○경찰청장 조지호 그거는 제가 무리한 진압이 있으면 당연히 사과를 드리는데요……

○박정현 위원 경찰청에서 이거는 염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압사 가능성성이 있음에도 무작정 경력을 투입한 부분이거든요. 청장께서는, 콘솔박스를 압수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 장소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건 현장의 지휘관이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서 들어갔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떻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합니까? 마침 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요. 거기 폭이 2.5m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도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그 골목, 집중적으로 사망이 있었던 그 골목의 폭이 4m입니다. 여기보다 더 좁은 곳이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경찰청장 조지호 그 도로의 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밀집도가 중요한 것인데요.

○박정현 위원 밀집도도 높지요, 5000명 정도가 참여한 곳인데.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 안에 5000명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5000명이 들어가는 공간은…… 충분히 공간이 있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경찰이 이 부분을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저는 세 번째 부분, 결국은 시위가 폭력적인 게 아니라 진압 자체가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는 소음 측정 때문에,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 됐기 때문에 콘솔을 압수하기 위해서 진압을 한 건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배경소음이 59.7dB이 나왔는데……

청장님, 숨소리가 몇 데시벨인지 아세요? 우리가 내쉬는 숨소리가 몇 데시벨인지 아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10dB입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그거는……

○박정현 위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배경소음이 훨씬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는 거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배경소음도 저희들이 다 측정을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측정을 해도 측정 장비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측정 장비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음 측정 장소는 소음 피해자의 위치로부터 1m~3.5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경찰청 경비국에 문의를 했더니 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위법한 것 아닙니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소음을 측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신고를 전제로 소음 측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현 위원 신고가 와서 소음 측정을 한 거잖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아닙니다.

○박정현 위원 신고가 왔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왔기 때문에.

○경찰청장 조지호 모든 집회·시위에는 소음 측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소음 측정을 하는데 일단 신고가 왔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것 아닙니까?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은 설사 소음 기준치를 넘었다 하더라도 좁은 공간에서 무리하게 진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와 집회로부터 이에 피해가 있는 시민 불편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잡힌 조율을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건데 이것을 집회를 진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진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께서 분명히 공식적인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진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압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음 유지 명령을 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소음이 나아지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윤건영 마무리해 주십시오, 두 분.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조금 있으면 집회가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두 분 다.

○경찰청장 조지호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박정현 위원 아니, 더 이상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께서 공개적인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시민들의 집회 자유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공권력이 보장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건영 특별하게 사과하실 의사도 없으신 것 같고 하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그렇지요?

다음, 양부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양부남 위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으로 인해서 지난 5월 달부터 현재 까지 우리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재산적 피해는 1억이 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공항의 활주로에까지 이게 떨어져 가지고 공항 교통, 이착륙도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피해를 저희들이 보다 더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민방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제인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합참본부에서 이런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에 대해서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 이 군사적 조치가 뭘 의미하는가, 부양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군사적 무력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고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국무회의에 가셔서 우리 대통령께도 잘 보고해 주시고 다른 국무위원들께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또 하나는 현재 부양물이 오물풍선이 착륙된 후에…… 현재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한 조치는 오물풍선이 착륙된 이후에 이것을 수거하거나 거기에 기폭제가 장착된 경우에는 기폭제가 폭발한 후에 이것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 어떤 구체적 방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물풍

선이 착륙되기 전에 이것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폭제가 장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기폭제가 장착돼 있다면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랄까 방안을 만들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매뉴얼을 만드셔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소관 부처하고 상의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양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종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양 위원** 다른 특별한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우리 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이런저런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모든 책임을 다 경찰한테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국가의 경찰관의 행태라든지 업무 형태라든지 그런 걸 좀 많이 봐 가지고 왔는데 한국 경찰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경찰로 평가받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각종 시위 현장이나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아니고 수세적이고 저렇게 대응하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정치인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경찰이 왜 저렇게 불법행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매번 집회·시위 현장에서, 특히 우리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현장에 나가 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더더구나 그런 현장에서 국회의원이라 그래서 특별하게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왜 우리 국회의원 다치는 것만 이렇게 부각이 돼야 되냐, 오히려 일반 시민이 다치는 것 같으면 더 부각이 되고, 국회의원은 더 법을 지켜야 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걸 숨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더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경찰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아, 국회의원들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별도로 보호하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하는 그런 지적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이번에 박홍배 국회의원, 동료 국회의원이 다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찰청장님, 그 당시에 9월 11일 날 박홍배 의원이 참석한 그런 집회에 있어서 우리 경찰의 과잉이라든지 특별히 경찰관의 법집행 과정상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동료 의원이 다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 경위를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그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관련되는 자료들을 다 봤고 영상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 올라온 영상도 확인을 해 봐도 그 의원님께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다쳤다고 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임시 보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진입할 때 그때 의원님께서 우리 경찰 부대 쪽으로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아마도 다른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경찰이 방패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다른 장구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다치신 부분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걸 경찰의 무리한 법집행으로 다쳤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양 위원** 저도 사실 동료 국회의원이 다쳤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소음 측정치가 초과되니까 그 관련된 장비를 임시 보관 조치하기 위해서 경찰관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조금 다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도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모든 걸 갖다가, 결과적으로 부상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갖다가 경찰에다가 책임 지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경찰이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하고 또 앞으로 공권력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이런 거와 관계없이 원칙대로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께서 그때 12일 날 집회와 관련된 동영상, 자료를 다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택적으로 자료를 보고 선택적으로 영상을 확인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영상을 봤습니다.

경찰청장님께서 집회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관련된 질의를 박정현 위원님께서 소상히 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는 재차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에요. 그리고 그 의원이 집회에 대한 정리를 하려 갔었어요. 방금 영상에서 박홍배 의원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잘 정리를 하려고, 사실은 집회를 종료하려고 갔던 거예요, 잘 끝내려고. 너무나도 참 안타깝습니다. 경찰의 그런 과잉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그다음 날 일이에요. 그다음 날 국회 환노위 박홍배 의원을 포함해서 국회 환노위 위원들과 그리고 저희 행안위 윤건영 간사님 비롯해서 행안위 위원들 도합 9명의 위원들이 경찰청장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알고 계

시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이해식 위원 그런데 그 시각에 경찰청장께서 안 계셨어요. 우리 위원들이 다 경찰청장 만나는 걸로 생각하고 갔었는데 특별히 경찰청장이 안 계시다 그런 얘기 사전에 들은 바도 없고 경찰청 차장님만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면담 도중에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해 주고 ‘어디 계시냐’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경찰청장이 서울 시내에 있는 거냐 아니면 어디 가셨나 그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왜 확인을 안 해 주지요?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청장님 그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9시에 본청 노고 부서를 격려하는, 9시 40분까지, 그리고 12시에 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가 있었고 오후 3시에 귀성 현장 점검이 반포지구대에서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11시 반쯤 경찰청을 찾았는데…… 청 내에 계셨지요, 그때?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식 위원 어디에 계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보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식 위원 말씀해 보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제가 처음에 그 보고를 받은 것은 한 9시 반경입니다. 9시 반에 노고 부서 격려를 끝내고 사무실에 오는데 저희 기획과장이 ‘항의 방문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 11시쯤 오신다’ 그래서…… 아, ‘11시 반쯤 오신다’ 그래 가지고 ‘아, 그 시간에는 기존 일정하고 이게 더블이 되는데, 좀 어렵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획과장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들어와서 ‘그러면 청장님이 안 되면 차장이라도 만나고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을 소화를 한 겁니다.

○이해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정이 있습니까, 무슨 일정?

○경찰청장 조지호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일정입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청사 내에 계셨습니까, 아닙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청사 내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12시에 오찬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나가서 일정을 소화하고 현지에서 바로 오찬 간담회장으로 가기로 그렇게 하고 나갔던 겁니다.

○이해식 위원 비밀 일정이었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그건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일정입니다.

○이해식 위원 비공개 일정이었느냐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그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한테 그리고 또 현장을 찾아간 국회의원들한테 확인 못 해 주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런데 그게 제가 바깥의 일정을 소화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차장이라도 만나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는 그렇게 양해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12시쯤 다 돼 가지고 전화가 와서 ‘청장님, 근처에 계시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이해식 위원** 그 얘기는 언제 들었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12시 좀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 12시 좀 전에?

○**경찰청장 조지호** 예.

○**이해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있을 시각에 그 얘기를 들은 거네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러니까 들은 시간이 그런데 그 들은 장소가 외부였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그 일정을 소화하고 12시에 있는 그 장소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이해식 위원** 무슨 일정인지 딱 얘기해 주면 간단하게 끝날 일 같은데?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제가 누구 좀 만나는 일정이라서 제가 좀……

○**이해식 위원** 사적으로 만나는 모임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해식 위원** 사적인 일정은 아니었다?

○**경찰청장 조지호** 예.

○**이해식 위원** 그러면 공적인 일정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못 해 줍니까, 확인을?

○**경찰청장 조지호** 그건 좀, 제가 일일이 보고드리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이건 그냥 넘어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도 그랬고 그 이전에 제가 국회의원 돼서 경험한, 경찰청에 찾아가면 언제든지 경찰청장께서 맞아 주셨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저도 예를 들어서 제 일정하고 맞춰서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분명히 만났을 겁니다. 제가 안 만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듯이 제가 안 만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정이 양해가 된 줄 알았던 것이지 그게 양해가 안 되고 다른 일정을, 그날 오후에 시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다음 날로 한다든지 했으면 제가 충분히 만났을 겁니다. 제가 위원님을 안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식 위원** 어떻든 공개를 못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이해식 위원** 추후에 따지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저 팩트 체크할 것 1분만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건영** 죄송한데 여야 간에 합의했던 게 있어서 다음 기회를 해 주시면……

○**이광희 위원** 아니,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위원장대리 윤건영** 아니, 제가 마무리 발언에서 소화를 해 내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있으니까 3명, 1명으로 이렇게 정리하고요.

경찰청장님, 제가 당일 날 현장에 갔던 사람으로서 한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지

간하면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갔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홍배 의원이 노조 집회를 참여해서 평화롭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와중에 생겨난 일입니다. 공권력이라는 건 국민을 위해 쓰여야지 국민을 해하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문제는 차후에도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 그리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과 보좌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62인)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요구 위원	출석요구 일시 및 감사대상기관
김 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새마을금고 운영 실태 관련	윤건영 조은희	
권선플	교수	특별재난지역 및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박정현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2020년 이후 매년 30억 원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한국스탠포드센터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감독권한 및 기능에 대한 점검	채현일	10. 7.(월) 행정안전부
김종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정부 행정정보망사업 장애 및 부실	신정훈	
김영섭	(주)KT 대표이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업 관련 비위행위		
이상국	(주)KTDS 대표이사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요구 위원	출석요구 일시 및 감사대상기관
허만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장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진행 경과, 원활한 진상규명 및 유족, 희생자 결정을 위한 대책 등	신정훈 용혜인	
배택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지원단장	새마을금고 부동산PF 부실 관련	모경종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윤건영 정춘생	
김태영	21그램 대표	대통령실 불법증축 관련	정춘생	
이승만	21그램 대표	대통령실 불법증축 관련	윤건영 윤건영 정춘생	
황윤보	(주)원담종합건설		윤건영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윤건영 정춘생	
박종현	행정안전부 청사시설기획관		윤건영	
김교열	행정안전부 관리총괄과장			
손동신	감사원 행정안전1과장	대통령실 불법증축 관련	정춘생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계엄의혹 관련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정 법인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부실 운영	이해식	
윤현준	잡코리아 대표	잡코리아 회원 개인정보 판매 문제		
안정식	엠캐피탈 대표이사	새마을금고 관련	이상식	
박정학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	새마을금고 부정대출 관련	조은희	
이정환	SK렌탈(주) 대표이사	장기렌터카의 불합리한 세제	정동만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요구 위원	출석요구 일시 및 감사대상기관	
최진환	롯데렌탈(주) 대표이사	혜택에 따른 지방세 탈세 의혹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음주운전 봐주기 징계처분 의혹	윤건영	10. 7.(월) 인사혁신처	
김영선	전 국회의원	대통령실 선거개입 의혹 관련	정춘생	10. 10.(목)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명태균	김건희 여사 주변인		윤건영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윤건영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윤건영 모경종		
강혜경	전 국회의원 김영선 회계책임자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	배터리 화재 관련	이해식	10. 10.(목) 소방청	
이용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장	김건희 여사 현장시찰 관련 지시사항 확인	위성곤		
장재훈	(주)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경찰 순찰차 납품 관련	신정훈	10. 11.(금) 경찰청	
최동식	서울특별시경찰청 제5기동대 53기동대/경위	특정인에 대한 인사청탁	한병도		
백해룡	경찰(화곡지구대장, 경정)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 관련	이상식		
최세윤	검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 인천지검 주임검사				
윤태식	한국평가정보 이사회 의장 전 관세청장				
최00	인천공항본부세관				
순00	인천공항본부세관				
조00	인천공항본부세관				
고00	인천공항본부세관				
노규호	전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사부장	법인카드 사적유용 부실수사 의혹	조은희	10. 14.(월) 경기도남부 경찰청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	의사온라인 커뮤니티 명예훼손 관련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 지휘 감독 관련	윤건영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김정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조은희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요구 위원	출석요구 일시 및 감사대상기관
이경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용표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장			10. 15.(화) 서울특별시 경찰청
김원환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이광숙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10. 17.(목) 충청북도경찰청
남성현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손순혁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장			10. 17.(목) 경상북도경찰청
배성훈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			10. 21.(월) 전라남도경찰청
정경채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재홍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10. 21.(월) 울산광역시 경찰청
정병희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안진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10. 22.(화) 광주광역시 경찰청
전준호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철준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10. 22.(화) 부산광역시 경찰청
김성식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			10. 23.(수)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김학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참고인(5인)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요구 위원	출석요구 일시 및 감사대상기관
허경옥	진도유족회 회원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 진실규명 보류판정 관련	이해식	10. 10.(목)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한종희	삼성전자 사장	휴대폰 긴급전화 서비스 문제	김상욱	10. 10.(목) 소방청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요구 위원	출석요구 일시 및 감사대상기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이경숙	인천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증언 등	용혜인	10. 11.(금) 경찰청
원은지	추적단불꽃 대표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실태 관련 질의	윤건영	

○출석 위원(21인)

김상욱 김성희 김종양 박정현 배준영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해식 정동만 정춘생 조승환 조은희 채현일
 한병도

○청가 위원(1인)

모경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조문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비상대비정책국장 김정학
 기획재정담당관 박성민
 법무담당관 김영석

인사혁신처
 처장 연원정
 기획조정관 김성훈
 기획재정담당관 윤미경

경찰청
 청장 조지호
 기획조정관 도준수
 경비국장 임정주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여윤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유진
 소방청

청장 허석곤

기획조정관 배덕곤

기획재정담당관 고영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진형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사무처장 송상교

기획운영관 한성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기획국장 김인수